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1년미만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환수 여부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즉,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만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미리 퇴직금 명목의 금품(귀 질의상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되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금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따라서 동 금품의 환수는 민사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 될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의 별도 특약(당사자의 합의)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공인노무사사무소(031-877-75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능 여부

저는 6년 전 무에게 제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와 협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부동산신탁법 제6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관한 규정을 대거 개정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르면, 부동산신탁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부동산신탁법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8년 6월 30일까지였고, 다만 그 이전에 소유자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탁등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명의로 등기하지 아닐 때, 과징금 부과 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20%의 이불강 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법 제6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에 관한 규정을 대거 개정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르면, 부동산신탁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부동산신탁법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8년 6월 30일까지였고, 다만 그 이전에 소유자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탁등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신탁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 등기할 것이 아니라,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부동산신탁법 제6조 제1항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신탁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명의신탁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1. 97마384).

그러므로 위와 무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031-829-8311)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장 신재우



전기세와 전기요금

1. 정의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납부”임

요금이란 “일반소비자가 자신이 획득한 이익(재화나 용역)에 따라 그 받

대급부로 지불하는 것임.

2. 전기세 용어사용의 배경

전기기와 물과 공기에 비교되는 필수재로 인식되면서 대체수단의 선택 여지가 없음으로 인해 세금으로 인식

우리회사(공기업)도 국가기관이라는 인식으로 전기세 용어 사용(예: 수도세(국가기관), 전화세(과거 공기업) 등)

3. 전기세 용어 사용의 부정적 영향

전기요금이 국제적으로 저렴함에

해 비싸다는 인식을 갖게 됨

대기라는 인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 자체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생

세금이라는 인식에 따라 다른 생활비에 비해 지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납부한다고 생각함

통계청 자료비교 결과('07년) (단위: 원)

Table with 4 columns: 구분, 전기요금, 교통비, 통신비. Rows: 가구당 월 평균지출, 38,000, 63,000, 135,000.

(4인 가족기준)

세금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요금인상에 대한 여론이 훨씬 부정적이고 저항이 심함

발전소 건설, 송전선로 건설 등에 투입되는 비용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 발생

(031-539-0257)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신부인과 과장 양용혁



폐경여성 건강관리

200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평균수명이 82.35세로 80세를 넘어섰다. 폐경이 50세 전후에 일어나므로 폐경 이후의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해 폐경 증상 완화 및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폐경 증상은 급성기에는 안면홍조와 발한이 가장 흔하며 불면증, 심계항진, 불안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후 비노생식기의 위축에 의한 질염, 소양증, 성교통, 질염, 질 건조, 빈뇨, 배뇨, 요실금, 빈번한 요감염이 생길 수 있고, 골라겐 소실로 인해 피부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주름이 생기며 근·골격계의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만성 후유증으로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이 노화와 더불어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양쪽 난소 모두 제거되거나 영구적으로 기능이 소실되어 월경이 끝난 지 12개월이 지나면 폐경으로 진단한다. 조기 폐경의 의심되거나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은 경우, 또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혈중 난포자

극호르몬을 측정하여 일반적으로 30~40 mIU/ml 이상이면 폐경으로 진단한다.

호르몬 요법은 우선적으로 중등도 이상(열감과 발한이 동시에 발현)의 혈관운동 증상이 있거나 위음부, 질의 위축증의 폐경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고, 증상이 없는 여성들에서도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 폐경 이후 조기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는 경우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 위험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다면 폐경 전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시작하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40세 이전에 난소기능이 없어진 경우를 조기폐경이라고 하는데, 배, 유방,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비노생식기계, 피부 등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폐경에 따른 병적 변화들이 조기 폐경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호르몬의 종류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그스테론이 있으며 투여 방법으로는 경구, 경

피, 피하, 경질 등이 있으며, 환자의 순응도, 장단점을 따져서 결정하게 된다. 에스트로겐 투여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하지경련, 유방암, 사지통증, 수분의 정체, 눈의 자극, 오심, 질 분비물의 증가가 있다. 하지경련(21%), 유방암(13%)을 제외하고는 드문 증상이며 유방암일 경우 치료 1~2개월 후에는 대부분 소실된다. 프로그스테론 투여시 질 출혈, 두통, 기분변화, 피로감, 유방의 압통, 부종 등이 생길 수 있다. 호르몬 치료는 허혈성 뇌졸중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고령, 흡연력, 당뇨, 고혈압, 비만, 심실세동 등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한다. 호르몬 치료와 유방암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어 더 많은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티볼론(호르몬 유도제)이나 자궁이 없는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은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호르몬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 매년 환자 개인별로 호르몬 요법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폐경 전후 여성인 경우 여성호르몬 결핍에 국한되지 않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과 골다공증, 관절염, 요실금, 유방질환, 감상성질환 등의 질환 및 검사를 받아야하며 암검진과 뇌혈관질환의 예방, 비만 치료, 피임 등 포괄적인 진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문의: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문의전화: 031-539-9150)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양성평등한 성이란?

양성평등이란 단어가 표출되어진 것은 여성이 기본적인 정치적, 성적, 시민적 권리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제도적 기회보장이 여성에게 곧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 영역의 경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의 많은 부분이 사적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동등한 대우기준으로서의 평등이 주로 공적영역에서만 국한되는 한 가족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불평등

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된다. 또한 법과 제도가 실제 현실에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평등을 동등한 대우로 정의할 때 때 핵심적인 문제는 여성은 지금까지 남성이 만들어 좋은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평등한 대우는 완전하게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차별을, 그리고 심리를 이해하고 인식이 바로 선다면 공적·사적 삶에서 좀 더 넓은 양성평등 사회가 정착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양성 평등이란 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생물학적인 차이를 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양성 평등은 성차별로 인해 개인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으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민족스럽게 인권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남녀가 모두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여 생활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며, 남녀가 함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을 때, 남녀 모두가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때 각자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한 성생활이란?' 성생활에 있어서 남녀 모두가 상대에 대한 '형제자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행위 중심적인 성이 아니라 마음까지 통할 수 있는 성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상속받은 농지 양도계획】

2008년 부친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양도하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부친이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으나 본인이 상속받은 후에는 타지에 거주하고 있어 농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농민이 농업에 필요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법상 감면조건에는 8

년 이상 농지소제자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 감면조건에서 '농지소제자에 거주한다' 란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농지지역과 연결한 시·군·구 안의 지역 그리고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은 상속농지의 경우,

8년 이상'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계속해서 경작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상속인이 농지소제자에 재혼을 하지 않거나 자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며,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여 주지 않습니다. (2006년 2월 9일 조부법 개정시행)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조부법 개정시행일인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상속농지를 소유한 분들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양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의: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풍성한 한가위 명절에 영동식품으로 선물하세요!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代表 文宰吉

< 생산품목 >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칼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칼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화 : 031-535-5773
■팩스 : 031-534-1313